제2608호 2018. 11. 5. 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: 공 보 실 장신 선 애

전화: 3396-4952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 기관의장 람

구



### ● 공 고

제2018-751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......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a href="http://www.junggu.seoul.kr">http://www.junggu.seoul.kr</a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
람						



제2608호 7-2 2018. 11. 5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751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> 2018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며, 이에 필요한 지역화폐 관리·운영,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지역회폐의 발행, 판매, 종류 및 유효기간, 유통범위, 지역회폐 대상 및 사용제한 등의 규정을 정함 (안 제3조 ~ 제6조)
- 다. 가맹점, 판매대행점, 운영대행사,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 (안 제7조 ~ 제11조)
- 라. 환전청구 및 환전, 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·수수료·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13조)
- 마. 지역화폐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15조)
- 바.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16조 ~ 제18조)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일자리경제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5597, FAX: 3396-8692, 메일: mk060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제2608호 7-3 2018. 11. 5.

. [첨부]

##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중구 지역화폐"(이하 "지역화폐"라 한다)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.
- 2."금융기관"이란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, 「농업협동조합법」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「신용협동조합법」의 협동조합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의 상호저축은행과 「새마을금고」의 지역금고를 말한다.
- 3. "판매대행점"이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- 4."운영대행사"란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.
- 5."사용자"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6."가맹점"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- 제3조(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) ① 지역화폐는 구청장이 발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위·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,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,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제4조(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액면 금액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  - 1. 지류형
  - 2. 전자식
  - ② 지류형의 경우,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제2608호 7-4 2018. 11. 5.

제5조(유통범위) ①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제6조(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) ①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.
  - 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
  - 2. 「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
  - 3.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(출자·출연기관 포함)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
  - ② 구청장은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,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7조(가맹점 지정 및 취소)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.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구청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.
  -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- ④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  - 3.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
- 제8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·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은 경우 위·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-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형 지역화폐 액면 금액(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 중 1 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⑤ 가맹점은 지역화폐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할인에 있어서 담배,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608호 7-5 2018. 11. 5.

⑥ 가맹점의 소재지,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지류형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  -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류형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- ⑤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관리 등에 대해서는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 및「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」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지류형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,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운영대행사 준수사항)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 집·분석·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  -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·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,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.
- 제11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.
  - 1.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2. 지역화폐가 위조·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
  - ③ 사용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608호 7-6 2018. 11. 5.

- ④ 발행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.
- 제12조(환전청구 및 환전) ① 가맹점이 지류형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 점에 청구하여야 한다.
  -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.
  -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.
- 제13조(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·수수료·인센티브 제공 방법)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(일시불)와 체크카드 로 구입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지류형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.
  - ④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.
  - ⑤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,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.
- 제14조(지역화폐 활성화 시책)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, 가맹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세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·공사·용역·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  -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, 맞춤형 복지점수,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수 있다.
  -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, 공익단체, 비영리민간단체,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  - 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, 경품제공,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15조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2608호 7-7 2018. 11. 5.

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,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- 제16조(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1.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2. 판매점대행점 및 위탁단체 지도·감독 결과 주요사항
  -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 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  - 1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2.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3.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4.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5.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
 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.
- 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「민법」 및 「상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